

12 정부해결책과 피해자구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제받기 위하여 장기간 진행해 온 교섭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미나마타병이 발생해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구제문제를 소송해 온 피해자들은 고령이 되고, 세상을 뜬 사람들도 많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소는 지금의 방식대로는 해결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을 그만두고 서로 대화로 해결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구제를 받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져서 1995년에 관계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정부해결책으로 해결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 해결책의 합의하에,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미나마타병 발생당시에 미나마타병발생지역에서 생활했고, 미나마타만과 그 주변에서 잡은 많은 물고기를 먹어 손발의 감각이 무딘 등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일시금 260 만엔을 지불되었고 행정으로부터 의료비용 등이 보조되었습니다.

【구제대상자수 11,540명…1997년 8월 1일현재 최종확정인수】

※구제대상자수는 생존자와 사망자를 합친 인수임

“국가와,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고,진심으로부터 사죄해야한다” “미나마타병을 제대로 인정하고 구제를 해줘야 한다”는 바람이 이루어지길 오랜세월 배래왔던 피해자들에 대해서,정부해결책이 바라던 형식이 아니었지만,정부해결책으로 해결을 보려고 했을때 이대로 계속 맞서가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매우 피로운 결단이 었지만,거의 모든 환자단체는 소송과 교섭을 그만두고,정부의 해결책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정부해결책에 동의하고 거의모든 재판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나마타에서 간사이쪽으로 이사를 간 피해자들은 공장폐수를 배수하는 것을 국가와 현이 막지 못해서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국가와 현의 책임을 추궁하는 재판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15일 국가와 현은 공장폐수에 대한규제를 하지 않은것을 처음으로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국가와 현이 책임을 인정하였

기 때문에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 구제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있습니다.

2009년에 미나마타병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 이전의 법률보다도 넓게 피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짓소가 ‘더 이상 돈은 지불할 수 없습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짓소의 경영을 생각해서 짓소를 ‘물건을 만드는 회사’와

‘환자들의 보상을 하는 회사의 두 개에 나누는 것에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는 피해자에 지불하는 금액 등 구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결정되어 있지만 미나마타병 공식확인에서 50년이상 지난 지금도 미나마타병문제의 해결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